

2020 인천공항형 일자리지원 시범사업

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

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근로자의 취업지원·생활안정 및 공항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·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0. 12. 15.

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

I. 사업개요

1. 사업명 :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
2. 지원대상 :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공항지역 내 중소기업
3. 접수기간 : 2020. 12. 16(수), 10:00 ~ 12. 22(화), 17:00
4. 지원내용 : 선착순 60명, 2020. 3. 1. 이후 실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채용 또는 복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기업지원금 지급
 - 가. (지급기준)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
 - 산정대상기간 4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: 90만원/월 × 4개월
 - 나. (지급방법) 법인기업(법인계좌), 개인기업(대표계좌)
 - 4개월 만근 확인 후 일괄 지급
 - 퇴사, 관외이전(기업, 개인),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4개월 미만 근무 기간이더라도 일괄로 환산하여 지급
 -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 관계없이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
 - 다. (지원한도)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
 -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

II. 지원요건

1.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항지역 내 중소기업
 - 가. 인천국제공항지역 내 소재
 - 나.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)
 - 다. 2020. 3. 1. 이후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
 - *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용계약 완료

2. 지원제외 대상

가.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유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
 나.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
 다. 특수 관계자 제외

* 사업주와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, 4촌 이내의 혈족,인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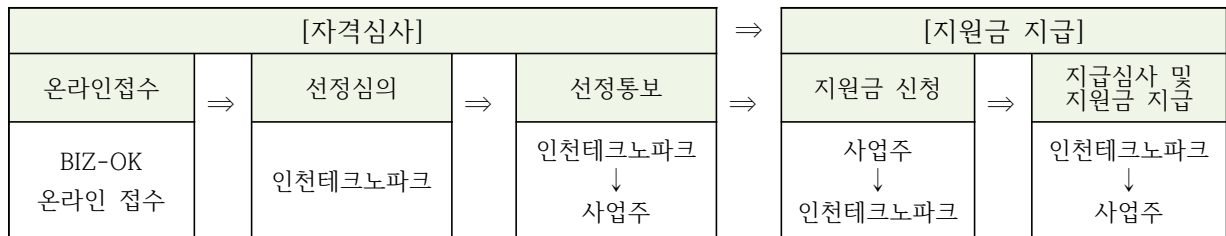
* 개인기업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,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

라.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

마.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(별첨 참조)

III. 절차 및 제출서류

1. 추진절차



2. 신청서류

가.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

나. 접수사이트 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

○ 기업지원 ▶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▶ 지원분야:인력선택 ▶ 중소기업
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

	구비서류	비고
기업	① 참여신청서 및 약약서, 기업정보이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신청일 기준 7일 이내) ⑤ 1년 이상 근로계약서 ⑥ 급여명세서(회사발행), 급여이체확인서(금융기관발행) ⑦ 사업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⑨ 취업규칙 ⑩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 최초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지 제출일기준 최근3개월 원본대조필 (10인 미만 기업도 제출 필수) 등기임원확인서(서식참조)
근로자	①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(신청일 기준 7일 이내) ③ 해당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

3.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

가.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

나.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(이메일, 팩스, 방문제출 등)

구비서류	비고
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(기업용, 신청일 기준 7일 이내) ③ 급여이체확인서 (금융기관발행) ④ 재직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(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) ⑥ 통장사본 ⑦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	제출일기준 최근3개월 계속근로 여부 확인 해당근로자 법인기업(법인 계좌), 개인기업(대표 계좌)

IV. 문의

1. 사업문의

가. 연락처/이메일 : 032-725-3031 / kjh529@itp.or.kr

나. 담당자 :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김정환 대리

2. 주소 : (22101)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4층

[별첨] 지원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1	주류 도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응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221 중	주류 소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5102	여관업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
64992	지주회사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²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